

하게 되면 거의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전자공정회는 병행하여서만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
- ④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②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 ④ 조세채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정답 ③

어찌보면 쉬운 문제이고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답을 쉽게 고른다면 정답은 ③번이다. 이유는 견해가 대립하는건 대부분 옳은 지문이다. 견해가 대립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드물기 때문이다.

- ①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 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②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 ③ 공무원일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지도 역시 논란이 있다.
- ④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국세징수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례는 현재 없다.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대집행게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게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 ② 건축법 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 ④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정답 ①

이 문제도 약간 쉬운 문제이다. 기본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이다.

- ① 반드시 대집행게고서에 의해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96누15428)
- ②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등).
- ③ 판례는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한 절차를 민사집행 방법을 사용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판 2000.5.12., 99다18909)

- ④ 퇴거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일 뿐 대집행의 대상은 아니다(대판 1998.10.23., 97누157).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행정절차법 도 비밀누설금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정답 ①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 관련부속법령이라 법령에 대한 암기가 없다면 맞추기 힘든 문제이다.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아마 출제의도가 정보공개법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어 사자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④ 일반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조금 지엽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청문에 보면 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사생활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 조금 지엽적인 문제로 보인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다. 즉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가...

6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2> 설명의 옳고 그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갑은 식품회사 을의 영업시설등을 검사하면서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영업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갑의 행위에 대하여 정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보기 2>

- ㄱ. 갑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 ㄴ. 국가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국가는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을이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ㄱ	ㄴ	ㄷ
①	○	○	○
②	×	○	○
③	○	×	×
④	×	×	×

6 정답 ②

- 이 문제는 조합을 잘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이다.
- ㄱ (X) 공무원 징계의 경우 소청심사는 필요적 전치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ㄴ (O)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심각한 주의의무 때문으로라고 되어 있어 이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 ㄷ (O)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도 국민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7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②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하는 행정처분이다.
- ③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④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7 정답 ④

처분에 관한 판례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다만 판례결론만 잘 체크하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난이도가 조금 올랐다는 것이 올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많아서 시간안배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처분이다.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10.27, 98두896)
- ②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행사자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2.10. 13, 92누2325)
- ③ 교통안전공단이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그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9.8, 90다12716)
-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3.10, 99두23617)

8 사인(私人)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 상 신고 요건으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의 기재사항은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②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유료노인 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용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③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영업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발생한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8 정답 ①

중간보다 약간 낮은 난이도 수준이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 ①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자족적 신고로 신고만 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그 진실함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의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용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07.1.11, 2006두14537).
- ③ 회원제 변경은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나, 이용료변경은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다. (대판 1993.7.6. 93마635)
- ④ 아직 영업양도의 수리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자는 양도인이고, 이 경우 그 책임도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 ② 갑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위 거부행위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위 거부행위가 있는 후에 갑은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정답 ②

어려운 문제는 아닌거 같다.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를 숙지하면 풀 수 있는 수준이다.

- ① 거부를 다투는 경우 꼭 그 권리가 성문법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불문법 침지어는 조리에 근거해서도 가능하다(대판 1989.11.28, 89누3892).
- ② 거부의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대판 1993.2.10. 자 92두 72)
- ③ 거부는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④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처분이 있는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③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 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0 정답 ②

이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있다. 이는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 ① 포인트는 있는 후이다. 위헌 결정 이후라면 무효가 되고 이전이라면 취소가 된다. (대판 2002.6.28., 2001다60873)
- ②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2.9.27, 2010두3541). 이 외에도 시장지배적이고 적극적인 경우에도 감면해준 처분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경우도 충분히 대상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허가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판 2012.1.12. 2010두5806)
- ④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판 2012.02.23. 2011두5001).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1 정답 ②

이 문제는 기초적인 지문을 출제문제로 낸 것으로 보인다. 부관의 경우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도 정답 ②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①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 부과가 가능하다. (대판 1997.3.14, 96누16698)
- ② 판례는 부관중에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관은 전체를 다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판 2001.6.15., 99두509)
- ③ 이는 판례의 입장으로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것을 사법상 계약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판 2009.12.10., 2007다63966)
- ④ 사후 사정이 변경되었다 해도 행위시법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부관이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시내용이다. (대판 2009.2.12, 2005다65500)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명령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다.
- ②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다른 법규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 ④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정답 ① 번

이 문제도 기본적인 판례결론을 알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대판 1995.6.30, 93추83)
- ②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결 1997.9.25, 96헌바18).
- ③ 판례지문 그대로이다. (헌재 1996.2.29., 94헌마213)
- ④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다른 구체적 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13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유홍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소송법 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정답 ④

- 이 문제도 기본적인 행정법 내용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정지는 인정되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 허용되지 않는다.
- 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후단 규정 그대로
 - ② 본안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구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유홍접객영업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처분의 존속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1.3.2, 91두1). 일반적으로 판례는 돈문제의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지 않는다.
 - ④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판 1992.7.6, 92마54) 현재 행정소송법에도 규정은 없다.

1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4 정답 ②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정답 지문자체가 워낙 생소한 문제로 접근이 용이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① 통고처분은 이행하면 그대로 끝이고 불복하면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범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

- 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대판 1993.9.10., 92도1136).
- ③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9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 ④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1996.4.12, 96도158).

1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③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 ④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5 정답 ③

이 문제는 많은 기본서에 있는 판례지문을 정답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난이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 ①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5.18 특별법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진정소급효를 합헌으로 보았다. (헌재 1999.7.22., 97헌바76)
- ②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결 1998.11.26, 97헌바56).
- ③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불소급의 원칙)(대판 1992.12.8, 92누13813)
- ④ 원칙은 20일이며,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되면 30일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16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 (라)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① (가)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붕괴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 ② (나)원칙의 요건 중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③ 재당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다)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 ④ (라)원칙은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16 정답 ③

- 9급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다.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고, 따라서 추후 공부할 경우 유형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사법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박스 내용을 명확하게 읽기보다는 지문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케이스가 아니라면 설문보다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 (가)는 비례의 원칙을 (나)는 신뢰보호를 (다)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라)는 실권의 법리를 이야기 한다.
- ③ 이는 최근에도 기출문제로 출제된 것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근거를 구하고 있다.
- ④ (대판 1988.4.27, 87누915)

17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①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 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③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④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7 정답 ③

- 이 문제도 기본서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 판례지문이라 난이도가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 ① 도시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대판 2002.10.11, 2000두8226)
- ②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계획변경이나 폐지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4.12.9., 94누8433)
-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3.9.23, 2001두10936)

-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04.4.28, 2003두1806).

1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행정소송법 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③ 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18 정답 ②

이 문제는 모든 교재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지문을 아는 사람은 쉽게 풀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쉽지 않았을 거 같다. (본 강사의 교재는 856페이지)

- ① 소송요건의 존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판 1987.4.28. 82누242)
-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 ③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하며, 이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 ④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대판 1994.4.26. 92누17402)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 문서이다.
- ②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③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④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19 정답 ④

어찌보면 어렵고 어찌보면 정말 기본기를 묻는 문제이다. 법령보충행정규칙이 왜 만들어 졌고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를

생각하면 즉 기초적인 내용을 생각하면 상당히 쉽지만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답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 ① 즉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
- ② 대판 1994.9.10, 94두33
- ③ 판례는 부령형식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구속력을 부정하고,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는 법규명령으로 보아 구속력을 긍정한다.
- ④ 우리 판례는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적 규정을 입법한 것은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대판 2003.9.5 2001두40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 ②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 ③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 ④ 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20 정답 ①

이 문제는 단순 문제이다. 기본 내용만 알면 되는 쉬운 문제로 보인다.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근거할 때 국정원이나 감사원처럼 상급기관이 대통령이거나 없을 때는 당해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따라서 이는 쉬운 지문이다.